

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9. 20.(목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의결안건 '나'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,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- 제51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, 제5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
- 국회에서 2011년 제15차·제51차·제67차, 2012년 제27차·제30차·제32차~제34차·제36차·제39차·제40차·제51차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함
- 2012년 제40차와 제51차 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은 명예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별 득표수와 후보자의 성명을,
 -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처리하고, 나머지 안건은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⑥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2-53-201~213)

-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(주)씨앤엠 등 23개사*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즉시중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,
 - 씨앤엠 계열 7개사,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2개사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(총 6억 2천 1백만원)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 - 아울러, 씨앤엠 계열과 (주)씨엠비광주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경고 하기로 함

*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, (주)티브로드수원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, (주)씨엠비광주방송, 남인천방송(주), (주)한국케이블티브이호남방송, (주)한국케이블티브이광주방송

○ 주요 내용

① 조사결과

- (주)씨앤엠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23개사의 디지털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'11. 1월 ~ '12. 4월까지 각 사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총 4,200건 확인함
 - 거짓으로 고지하여 디지털상품으로 가입시킨 행위
 - 요금 등 디지털상품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
 -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무단 전환시킨 행위

② 법 위반행위

- 거짓으로 고지하여 디지털상품으로 가입시킨 행위는 “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[별표 2의2]의 III. 2호 나목”을 위반
- 계약시 디지털 상품의 요금·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“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,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[별표 2의2]의 III. 2호 나목, V. 1호”를 위반
- 아날로그 상품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결여한 행위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,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[별표 2의2]의 III. 2호 나목, V. 1호

③ 시정조치 내용 : (주)씨앤엠,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23개사

- 금지행위의 중지,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, 업무처리절차 개선, 이용약관 변경(CJ헬로비전 계열, (주)씨엠비광주방송, 남인천방송(주)만 해당됨), 이행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

④ 과징금 부과 : 총 6억 2,100만원

구분	SO명	과징금 부과금액(만원)
씨앤엠 (7개사)	북부케이블TV	9,900
	구로금천케이블TV	1억 2,800
	경동케이블TV	8,000
	강동케이블TV	5,100
	송파케이블TV	7,200
	경기케이블TV	6,500
	경기동부케이블TV	800
	소 계	5억 300
씨앤엠	울산케이블TV	3,000
씨제이헬로비전 (2개사)	영남방송	2,600
	경남방송	6,200
	소 계	8,800
합 계		6억 2,100

나.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- (2012-53-214)

- o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따라 김충식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, 임기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어린이·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

- o 전자파 종합대책('11.9월 수립)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로부터 어린이·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(안)을 양환정 전파 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<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폰 이용 가이드라인 >

- ☐ 어린이는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
- ☐ 통화할 때는 휴대폰을 얼굴에서 조금 떼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
- ☐ 통화는 짧게 할수록 좋아요.
- ☐ 통화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오른쪽! 왼쪽!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해요.
- ☐ 얼굴에 대고 하는 통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세요.
- ☐ 휴대폰 사용시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
- ☐ 휴대폰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해요.

- 잠잘 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마세요.
-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을 믿으면 안돼요.

나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기본법에서 시행령을 거쳐 고시로 재위임된 징수율의 결정 권한을 고시로 직접 위임하고,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통일하는 등을 반영한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일부 개정안을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- ① 재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(법제처 개선안 반영) (안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)

- 기본법에서 시행령을 거쳐 고시로 재위임된 징수율의 결정권한을 고시로 직접 위임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,
- 권한위임의 변경(기본법→고시)에 따라 시행령의 ‘징수율 책정 시 고려사항’도 기본법에 상향시켜 규정

- ②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통일하고 징수시기를 명확화(안 제25조제3항, 제4항 및 제8항)

-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‘해당연도’로 통일하고,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하여,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

- ③ 위헌성 정비에 따른 시행령의 위임근거 마련(안 제25조제8항)

- 위헌성 정비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‘분담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(시행령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)’에 대해 기본법에서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를 마련

○ 향후일정

- 2012. 10월 :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
- 2012. 11월 : 개정안 위원회 의결
- 2012. 12월 :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
- 2013. 1월 : 국회 제출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10. 5(금)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5)